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4	제 정 일 자	2013.08.28
	물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23.04.04(4)	쪽 번 호	1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수질오염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2	구리와 그 화합물 등 총 61종 중 해당항목 개정 2020.11.17	구리(동)및그화합물,납(연)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가드뮴및그화합물,유기물질 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3	구리와 그 화합물 등 총 33종 중 해당항목 개정 2017. 1. 19	구리(동)및그화합물,시안화합물,납(연) 및그화합물 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4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 m³/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 m³/일 이상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설 외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수질환경관리 절차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5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 설 등	화학적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폐수처리장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수질환경관리 절차	
	총량 규제	법 4 조 규칙 제 16 조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 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해당 없음			
제 3 장 저오염원의 관리 제 1 절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법 32 조 규칙별표 34[별표 13]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신고시설 : 배출허용기준 준수 신고시설 : 사내관리 기준 준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허가 대상규모	법 33 조 ① 영 31 조① 규칙 36 조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 치하는 배출시설’ 19.10.15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 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설치신고 대상규모	법 33 조 ① 영 31 조② 규칙 36 조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4	제 정 일 자	2013.08.28												
		물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23.04.04(4)	쪽 번 호	2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신 고	변경허가 대상규모	법 33 조 ② 영 31 조③ 규칙 36 조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100 분의 50(특정 수질유해물질 : 30/100) 이상 또는 1 일 700 ㎥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 7 항제 2 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 필요 시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허가 실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제 1 절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변경신고 대상규모		법 33 조②,③ 규칙 38 조	[허가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 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폐수배출량이 증/감으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영제 31 조제 4 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2023. 4. 4> 1.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3.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5.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6.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측정/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업장의 분류기준		영 별표 13	<table><tr><th>종 별</th><th>배 출 규 모</th></tr><tr><td>1 종 사업장</td><td>폐수배출량: 2,000 ㎥/일 이상 사업장</td></tr><tr><td>2 종 사업장</td><td>폐수배출량: 700 ㎥~ 2,000 ㎥/일 미만</td></tr><tr><td>3 종 사업장</td><td>폐수배출량: 200 ㎥~ 700 ㎥/일 미만</td></tr><tr><td>4 종 사업장</td><td>폐수배출량: 50 ㎥~200 ㎥/일 미만</td></tr><tr><td>5 종 사업장</td><td>상기 제 1 종 ~ 제 4 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td></tr></table>	종 별	배 출 규 모	1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0 ㎥/일 이상 사업장	2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700 ㎥~ 2,000 ㎥/일 미만	3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 ㎥~ 700 ㎥/일 미만	4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50 ㎥~200 ㎥/일 미만	5 종 사업장	상기 제 1 종 ~ 제 4 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2 종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명서	
		종 별	배 출 규 모																		
1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0 ㎥/일 이상 사업장																				
2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700 ㎥~ 2,000 ㎥/일 미만																				
3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 ㎥~ 700 ㎥/일 미만																				
4 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50 ㎥~200 ㎥/일 미만																				
5 종 사업장	상기 제 1 종 ~ 제 4 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방 지 시 설 의		방지시설 설치	법 35 조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화학적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폐수처리장		공사 사양서 공사 완료 보고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영제 33 조 규칙 41 규칙 42 규칙 43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해당됨		수질환경관리 절차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4	제 정 일 자	2013.08.28
		물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23.04.04(4)	쪽 번 호	3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설 치 등			규칙 제 42 조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처리 1.폐수를 제2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이를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2.삭제 : <2021. 12. 10.> 해역배출 3.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 4.폐수를 제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규칙 44 조, 별표 14	1.영 33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영 33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영 33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영 33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수질환경관리 절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12. 10.> 1. 영 제 33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 33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 41 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 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 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센티미터, 세로 4 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4 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 의 2 와 같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 해 1 월 10 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3. 영 제 33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폐수(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 42 조제 4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 62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 4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 해 1 월 10 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 42 조제 3 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제 42 조제 3 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 2 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4	제 정 일 자	2013.08.28
	물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23.04.04(4)	쪽 번 호	4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가 동 시 작	배출시설 등의 가동 시작 신고	법 37 조 규칙 46,47 조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 시작 신고		관공서 가동개시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 시작 신고의 대상규모	영 34 조				
	배 출 시 설 / 방 지 시 설 의 운 영	운영상 금지사항	법 38 조①	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 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운영기록 보존	법 38 조③ 규칙 49 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 년간 보존.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현장 일상점검 실시를 통한 준수여부 확인	
	측정기기의 부착 등		법 38 조의 2 영 35 조 영 별표 7 영 별표 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 년간 보존.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측정기기의 부착 등	법 38 조의 2 영 35 조 영 별표 7 영 별표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2.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 시설을 포함)을 운영하는 자 3.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영[별표 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영[별표 8]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1.수질연속자동측정기 (pH,BOD,COD, SS,T-N,T-P) 2.적산전력계 3.적산유량계(용수, 폐수)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4	제 정 일 자	2013.08.28
	물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23.04.04(4)	쪽 번 호	5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법 38 조의 3 규칙 50 조	①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현장 일상점검 실시를 통한 준수여부 확인		현장 일상점검표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부과금	법 41 조 영 41~46 조 규칙 53~58 조	- 영 42 조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 영 46 조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 6.납 및 그 화합물 7.6 가크롬화합물 8.비스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 10.폴리클로리네이트디바이페닐 11.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질소 19.총인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		기본 배출부과금 신청서	
			제 41 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제 33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 32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 32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4	제 정 일 자	2013.08.28					
	물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23.04.04(4)	쪽 번 호	6 / 6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 임명 및 자격기준	법 47 조 영 59 조	- 법 47 조 : 환경기술인 임명 - 영 별표 17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수질환경관리 절차					
				<table><tr><td>구 분</td><td>환경기술인</td></tr><tr><td>제 1 종 사업장</td><td>수질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td></tr><tr><td>제 2 종 사업장</td><td>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td></tr><tr><td>제 3 종 사업장</td><td>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 인 이상</td></tr><tr><td>제 4/5 종 사업장</td><td>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 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 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 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 는 자 1 명 이상</td></tr></table>	구 분			환경기술인	제 1 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제 2 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구 분	환경기술인											
제 1 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제 2 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제 3 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 인 이상											
제 4/5 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 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 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 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 는 자 1 명 이상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규칙 64 조	[규칙 제6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1.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환경주간점검표					
보칙	환경기술인 교육		법 67 조 규칙 93~100 조,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3 년마다 1 회 이상	교육 수료증					